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2863

제출년월일: 2025년 5월 26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」는 난임, 유산·사산 및 임산출산, 양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 관련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통해 문제 완화와 삶의 질향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

- 나. '24년 4월 보건복지부 권역 상담센터 운영 공모에 선정되어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'24년 9월 서울권역 상담센터 개소 후 '25년 12월 31일자로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
- 다.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인력 활용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 관리 및 운영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모자보건법」 제11조의4(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사무의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제①항2호(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), 3호(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)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-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난임부부, 유산·사산 경험부부, 임산부,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상담, 정서적지지 및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의 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대로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 활성화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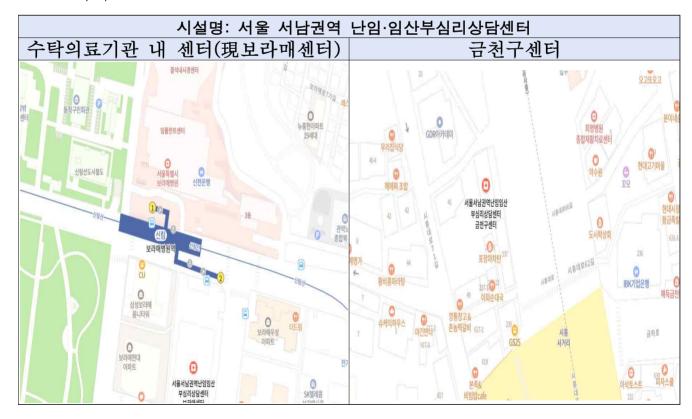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센터 설치 및 수탁시설(자산) 종합적인 관리 운영 전반
- 난임·임산부 우울 및 심리평가
- 방문자 상담, 전화상담, 방문상담, 자조모임 운영
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
- 고위험 대상자 발굴 시 기관 내 진료부서 또는 외부 진료 가능 기관 연계
- 권역별 난임 여성·임산부 심리상담 연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
- 전담 인력 채용, 교육, 사례관리 등 상담 인력 역량강화
- 심리상담센터 홍보 등 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추진
-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무
- 라. 민간위탁기간 : 2026.1.1.~2028.12.31.(3년)

- 마. 위탁시설 개요(시설명, 조직, 소재지, 규모, 주요시설, 위치도)
 - 시 설 명 : 서울 서남권역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
 - 조직도 및 정·현원 : 1개 권역 2개센터(센터장/부센터장, 팀장외 팀원3명)



- 주요시설 : 개인·집단상담실, 민원대기실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- 바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 -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「모자보건법 시행규칙」제12조의4(상담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)의거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모·선정

사. 소요예산 : 325백만원

- 민간위탁금 : 325백만원(국비 50% 130, 시비 50% 130, 자체시비 65)
 - ※ 금천구센터 임차료 및 임차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: 부서예산 편성(35백만원)
 - ※ '26년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 예산 금액 변경될 수 있음
- 산출근거 : 인건비246,127천원, 운영비 57,741천원, 사업비 등 21,132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모자보건법

모자보건법 제10조의5(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) 모자보건법 제11조의4(나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·유영 등)
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난임 극복, 산전·산후우울증 극복 및 유산·사산 예방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 난임·임산부심리상담센터(이하 "권역별 상담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유영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**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**할 수 있다.
 - 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 · 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

-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3.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· 심리 지원사업
- ② 시장은 유산·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- 2. 유산·사산부부에 대한 상담·심리 지원사업

서울특별시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사무의 위탁)

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시립병원, 보건 ·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

- 2025.5.6.: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(신규위탁)

- 2025.5.13.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(적정. 2025. 제3차)

○ 향후계획

- 2025.6.: 시의회 동의

- 2025.8.~12.: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박정민 (☎ 2133-9492)